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42
------------	------

발의연월일 : 2016. 12. 16.

발 의 자 : 이재정 · 진선미 · 소병훈

박남춘 · 김영호 · 백재현

표창원 · 김정우 · 윤호중

이춘석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 등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보상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때에는 치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수난구호업무 종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부상에 대한 치료 지원은 별개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보상기준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오히려 치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보상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때에는 치료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구조 활동 참여로 인한 민간인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의 적정성 및 합리성을 담보하고자 함(안 제29조제7항).

법률 제 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7항 중 “사람이 제5항에 따른 보상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을 “사람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료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4·16세 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4·16세월호참사의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자 중, 보상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9조(수난구호를 위한 종사명 령 등) ① ~ ⑥ (생 략)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u>사람이</u> 제5항에 따른 보상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p>	<p>제29조(수난구호를 위한 종사명 령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u>사람이</u>----- ----- ----- -----.</p>